

'99년 전자산업 통상환경 전망 (I)

<본회 통상협력과>

차 례

I. 세계경제 전망 및 최근의 통상환경

II. 국제무역관련기구의 최근 동향과 전망

III. 주요 다자협상 현황과 전망

IV. 1999년 EU 통상 환경 전망

V. 1999년 미국 통상 환경 전망

I. 세계경제 전망 및 최근 통상환경

1.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99년의 세계경제 성장 : 98년에 이어 침체 지속>

1999년 세계경제는 아시아, 중남미, 러시아 경제위기 여파와 중국 위안화, 홍콩 달러, 일본 엔화 등의 불안정으로 2%대의 성장이 전망된다.

미국경제는 아시아, 중남미 등의 경제악화로 무역수지 적자폭

99년 세계경제 및 무역 전망

(단위 : %)

	'96	'97	'98(추정)			'99(전망)		
			IMF	WEFA	OECD	IMF	WEFA	OECD
전세계	4.1	4.1	2.0	2.1	2.0	2.5	2.7	2.1
선진국	2.7	3.0	2.0	2.2	2.2	1.9	2.2	1.7
미 국	2.8	3.8	3.5	3.4	3.5	2.0	2.4	1.5
일 본	3.9	0.9	-2.5	-2.1	-2.6	0.5	0.4	0.2
E U	1.7	2.9	2.9	2.7	2.8	2.5	2.4	2.2
개도국	6.6	5.8	2.3	.	.	3.6	.	.
아시아	7.1	3.7	-10.4	-3.8	.	-0.1	0.4	.
중남미	3.5	5.1	2.8	2.9	.	2.7	3.5	.
동구권	-1.0	2.0	-0.2	.	.	-0.2	.	.
세계무역신장률	6.8	9.7	3.7	5.4	4.6	4.6	5.5	5.3

자료 : IMF('98. 9. 30), WEFA('98. 9. 14), OECD('98. 11)

이 심화되어 2%대로 성장세가 둔화되며, 이에 따라 대외 통상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EU경제는 1999년 1월 1일 유럽 단일통화(EMU)의 순조로운 출발을 바탕으로 전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일본은 경기부양정책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탈피하나, 금융불안 및 수요위축 등으로 0.4%의 소폭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아시아 지역은 중국 위안화 불안정,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세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중남미 지역은 '99년 1월의 브라질 사태의 도미노 효과 여부가 경제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는 '98년의 모라토리움 여파로 수입 위축과 경제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2. 원/달러 환율

<엔화강세가 급반전, 140엔대 이상으로 급락하지 않는 한 하향안정세 전망>

99년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외환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국내금리 하락으로 기업들이 기존의 외화부채 상환 등 달러화 매입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원화환율이 큰 폭으로 절상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해외 주요 기관의 원화환율 전망

전망기관	전 망	전망시점
EIU 설문조사	3개월후 1,363원 → 6개월후 1,390원 → 12개월후 1,398원	98년 11월
Citi Bank	99년 1월 1,350원 → 99년 4월 1,350원	98년 11월
EIU 전망	2000년까지 점진적인 강세화 (2000년 평균 1,100원)	98년 11월

해외기관들은 대체로 원화의 약세를 전망하고 있으나,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으로 1,300원내외에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올해 1월초 1달러당 1,100원대로 하락하였으나, 김대통령 1월 20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1,200원대를 유지하겠다고 언급)

3. 대외통상 전망

가. 통상환경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세계 총수입의 1/5을 차지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기침체로 수입수요 감소가 지속될 전망이

< 대한수입규제 현황 >

구 분	IMF이전(97년말)	IMF이후(98년 10월 현재)
규 제 종	47	45
조 사 종	8	23
신규제소	6(97년중)	14☆

☆98년중 신규제소 품목

- 미국(4건) : 스텐레스강선, 열연후판, 냉연강판, 합성고무
- EU(3건) : 로프와 케이블, 스텐레스 강선, 폴리에스터 섬유사
- 남아공(3건) : 아크릴 담요, 용접 스텐레스 강관, 카본블랙
- 호주(1건) : 단열재 및 충격흡수제 원료
- 인도네시아(1건) : Tin Plate
- 인도(1건) : 합성고무
- 콜롬비아(1건) : 타이어

다.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증가와 실질 가치분소득 감소가 주요인)

한국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아시아 시장의 위축과 미국, EU 등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의 반덤핑 제소 등 각종 수입규제 강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이 해외수요 감소 및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전망이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가 예상된다.

<미국의 무역수지 악화에 따른 시장개방압력 확대될 전망>

7년간에 걸친 미국경제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되어 미국은 무역정책 및 산업정책을 보호주의적인 정책으로 선회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미 무역에서 최대 흑자국인 일본 및 중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고, 아울러 동남아 및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재연될 전망이다.

쌍무적 통상 측면에서, 클린턴 2기 행정부 통상정책 기조는 수출확대와 교역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어 자동차, 농산물, 의약품, 식료품 등의 상품과 더불어 통신, 금융,

항공, 전문서비스 시장의 개방압력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나.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될 우려>

최근 자국 시장보호를 위한 각국 기업들의 반덤핑 제소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EU 등 선진국시장에서 해외 경쟁기업 공략에 이용되고 있어 반덤핑 제소 증가와 보호주의 확산은 세계경제를 더욱 큰 침체로 유도할 우려가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18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시행중이며, 최근 철강제품과 DRAM반도체에 대해 고율의 덤핑판정을 내린 바 있다.

EU는 또 9개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DRAM, 비디오 테이프 등 6개 제품에 대해 반덤핑 여부를 조사중이거나 제소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개도국들도 자국 산업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자율규제 요구나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U, NAFTA 등 경제 블럭들은 경제통합의 정도를 더욱 심화시켜 21세기를 대비한 세계경제 패권 장악에 박차를 가할 전망>

EU는 EMU 출범과 관련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구체적 성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주의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NAFTA는 미국을 중심으로 반덤핑 관세부과, 지적재산권 보호, 원산지규정 강화 등 북미시장 통합을 더욱 진전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북미에 진출한 투자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된다.

미국은 남미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을 위한 협상을 98년 9월부터 개시기로 합의하는 등 남미와의 무역·투자관계를 긴밀히 할 전망이다.

4. 국내외 전자시장 전망

<세계 전자시장>

○ '99 세계 전자시장은 '98년 2.2% 보다 다소 높은 6.9%의 성장이 예상되며 컴퓨터(8.6%), 산업용(7.8%)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표1, 2>

<국내 전자시장>

○ 가정용기기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은 성장이 예상된다.

<표 3>

(표 1)

(단위 : 억불, %)

구 분		'98		'99	
		시장규모	증감률	시장규모	증감률
부문별	Data Processing	3,126	3.8	3,396	8.6
	Communications	2,197	4.8	2,318	5.5
	Industrial	1,319	-0.6	1,421	7.8
	Consumer	1,690	-2.3	1,782	5.5
	Military/Civil Aerospace	568	2.8	588	3.5
	Automotive	460	5.2	501	9.0
Total		9,358	2.2	10,005	6.9
지역별	America	3,641	6.7	3,938	8.1
	Japan	1,729	-13.1	1,780	3.0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2,175	7.5	2,302	5.8
	Asia Pacific	1,813	4.6	1,986	9.5

자료 : Dataquest('98. 10)

(표 2)

(단위 : 억불, %)

구 분		'98		'99	
		시장규모	증감률	시장규모	증감률
부문별	컴퓨터	3,178	4.2	3,337	5.0
	사무기기	184	0.4	1,863	1.0
	제어·계측	807	1.8	824	2.1
	의료·산업	344	5.1	360	4.6
	군용·무선통신	1,175	2.8	1,212	3.2
	유선통신	942	0.03	940	-0.2
	가전제품	794	0.2	813	2.4
	전자부품	3,002	4.3	3,199	6.5
전 체		10,427	3.2	10,873	4.3
지역별	미국	3,820	4.7	3,988	4.4
	유럽	2,674	3.8	2,767	3.5
	일본	2,027	1.7	2,115	4.4
	기타	1,907	0.8	2,002	5.0

자료 :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98. 4)

(표 3)

(단위 : 증감률, %)

구 분		생 산		수 출		시 판	
		'98	'99	'98	'99	'98	'99
대 우 경 제 연 구 소	가정용기기	4.1	-5.1	14.2	-5.6	-42.8	-20.0
	정보기기	12.3	4.7	-11.4	3.8	-20.9	5.4
	통신기기	19.7	8.2	16.4	35.1	-9.7	-0.8
	전자부품	36.6	6.0	-10.1	9.4	-10.9	9.4
삼 성 경 제 연 구 소	가정용기기	2.8	-10.9	-12.1	2.3	-23.1	-7.4
	산업용기기	3.4	-1.8	1.9	3.5	-13.7	-1.3
	반도체	31.4	2.2-	-1.6	3.8	-	-

II. 국제무역관련기구의 최근 동향과 전망

1. WTO

가. 개요

WTO는 1995년 1월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세계무역의 자유화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체약국 수를 크게 늘림으로써 명실공히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기구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1997년 현재 체약국 수는 140개국에 육박) 종래 끝없는 무역 분쟁으로 치달던 문제들을 분쟁 해결기구를 통하여 쉽게 해결해 내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등 새로이 등장한 주요 교역국과의 가입 협상이 부진함으로

써 WTO가 세계무역의 주요 관 심사를 완전하고 충분하게 관 장 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나. EU·일본, WTO 차기협 상 원칙 합의

EU와 일본은 1999년 1월 7일 오는 2000년 개시에정인 WTO 차기협상이 일괄협상(single-undertaking) 방식으로 약 3년 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합의하고, 향후 협상과정에 있어서 공동입장을 취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레온 브리튼(Leon Brittan) EU부위원장과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일본 통상성 장관은 공동성명서에서 WTO 차기협상이 전회원국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포괄협상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 나미국은 포괄적인 협상방식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농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문별 협상을 고수하고 있다.

금년 1월 2일 EU와 일본은 도 쿨에서 개최된 합동회의에서 그 와 같은 미국의 입장을 거부하 기로 합의하였으며, 무역자유화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 이고 있는 일부 개도국들에 대 해 포괄협상방식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 성명서는 차기협상이 이미 WTO의 내장된 의제 (built-in agenda)의 일부분인 농업 및 서비스협상과 더불어 공산품관세(industrial tariffs) 인 하와 투자 및 경쟁정책 등 제1 차 WTO 각료회의에서 제기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범제정을 목표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EU와 일본은 이미 국제투자자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바, 교섭의 출발점으로서 기업의 국적에 의해 투자조건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최혜국대우원칙을 확인하고 각국 투자관련 규제의 투명화 및 규제철폐를 목표로 한다는 원칙을 협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편, EU와 일본은 금번 성명을 통해 철강부문에서 고조되고 있는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여타 국가들이 보호주의 조치를 억제하고 지속적으로 국제무역 규범에 따를 것을 촉구하였는데 이는 최근 미국의 철강업계가 수차례 통상마찰을 야기시키고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다. 중국의 WTO가입과 지적재산권

중국은 WTO의 조속한 가입과 외국기업의 합법적인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동 과정에 있어서 이에 상응하는 법의 집행을 수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6년 4월 미국은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개선하겠다는 95년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무역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어,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는 중국의 대외통상관계 정립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다.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중 94%가 불법복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는 미업계에 연간 약 8억달러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부재는 합법적인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상당부분 고안된 중국의 개방화 정책에 반하고 있으며, 중국이 WTO에 조속히 가입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기반의 확립이 관건이다.

2. OECD

OECD에서는 UR 이후의 추가 무역자유화를 겨냥하여 논의의 범위(scope) 및 방법(modalities)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21세기 세계경제 통합을 선도하기 위한 움직임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은 아직까지는 뉴라운드 출범 등과 같은 표현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추가 무역자유화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원칙적으로

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 추가 무역자유화의 범위에 대해서는 농업, 금융 등 WTO의 기정의제(BIA, Built-in Agenda)와, 경쟁정책, 투자, 인터넷 전자상거래, 환경 등의 뉴 이슈들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수는 있겠으나, UR 협상의 경험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타결이 가능한 이슈를 발굴하는 데에 우선적인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무역자유화의 추진 방법과 관련해서는 ITA 방식의 부문별 자유화, OECD의 부패나 MAI 방식의 복수국가간 협상, APEC 등의 지역간 추가자유화 등 다양하고도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검토가 있을 것이다.

3. APEC EVSL 논의동향

97년 11월 벤쿠버 정상·각료회의시 15개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Early Voluntary Sectorial Liberalization)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 9개 우선추진분야 : 98. 6월 까지 이행계획 수립
- 6개 후속추진분야 : 98년중 제안내용을 개선

98년 2월 이후 고위관리회의의(SOM), 무역투자위원회(CTI) 및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조기자유화 논의를 진전 시켰다.

- 9개 우선추진분야의 품목범위, 목표세율, 목표년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
- 회원국별 민감분야에 대해서는 상호이익과 이해의 균형을 고려, 이행기간 연장 등의 신축성 허용

98년 9월 SOM/CTI 회의기간중, 분야별 전문가회의가 개최되어 각국의 민감 품목에 대한 검토와 신축성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분야별 유보품목의 사유설명, 신축성 유지방안 등에 대한 쌍무/다자간 협의가 있었으나 98년 11월 APEC 각료회의시 일부 회원국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APEC내에서의 이행은 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에 맡기고, 내년중 WTO에서 비회원국들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하였다.

III. 주요 다자협상 현황과 전망

1. ITA(정보기술협정)

가. ITA I

○ 추진배경 : 미국이 중심이 되어 선진 4개국(Quad : 미국, 일본, EU, 캐나다)을 주축으로 IT(Information Technology :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무관세화를 통해 세계 무역자유화를 주도키

위해 정보기술 제품에 대해 '97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까지 무관세화를 추진

- 대상분야 : 컴퓨터 하드웨어와 부분품 및 소프트웨어, 반도체와 집적회로 및 부분품, 반도체 생산장비 및 검사장비, 정보통신장비, 광전자제품 등
- 미국은 ITA 대상품목의 경쟁력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ITA를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은 ITA 대상품목의 관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서 ITA 추진에 동조하고 있고 EU는 관세 무세화와 함께 비관세장벽 제거도 희망하고 있다.

나. ITA II

- ITA II 논의 경과 : '96. 12월,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에서『정보기술제품의 교역에 관한 자료 선언』 채택, '97. 2 유예품목등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거쳐 '97. 7. 1부터 1차 인하시작
- 참여국 : 한국, 미국, 일본, EC 등 43개국
- 대상품목 : 반도체, 통신장

- 비, 컴퓨터 등 203개 품목
- 내용 : '97. 7. 1~2000. 1. 1까지 4단계에 걸쳐 관세철폐, 대상품목의 확대가능성, 비관세분야에 대한 향후논의 언급
- 품목확대와 관련하여 각국이 WTO에 추가품목 리스트 제출
- 제출국 : 미국, 일본, 호주, 홍콩, 대만, 캐나다, EU, 스위스, 싱가포르, 터키, 이스라엘, 필리핀, 노르웨이 등 13개국
- 리스트중 전자관련 제품은 총 128개 품목임 <표 4>

WTO 정보기술제품위원회(Committee of Participants on the Expansion of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는 98.12.11일 회의를 개최하여 99. 2. 22일을 전후하여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ITA)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협상(ITA-II)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EU 15개국을 포함하여 동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44개 참여국 중 35개 국가가 ITA-II 목록 초안을 수용할 것임을 표

(표 4)

분 야	품목수	분 야	품목수
전자부품	68	통신제품	4
가전제품	38	정보제품	4
산업전자	13	의료장비	1

명하였는 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홍콩,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터키, 대만,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에스토니아, 코스타리카,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등이 ITA-II 제안을 지지하였다.

대다수 참여국들은 절충안인 금번 ITA-II 제안이 금융위기 속에서도 WTO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적절하고도 균형잡힌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있음을 강조하며, 정보 기술(IT)제품에 관한 비관세 조치(non-tariff measures)의 처리를 포함하여 ITA-II협상의 빠른 타결을 서두르고 있으며, 그들중 대부분은 “가전제품”(electronic consumer goods)의 포함을 반대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들은 일부 제안된 품목들의 관세철폐를 위해 기간연장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는 동 제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협상을 위한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말레이시아는 동 제안이 말레이시아가 요구한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수정이 없는 한 동 목록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인도는 非 정보기술제품으로 고려된 일부 보안관련(security-related) 제품들이 동 목록에 포함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엘살바도르는 잠정(안) 목록에 대한 국내협약의 현재 진행중이며, 필리핀은 현재까지 동 목록을 수용할 만한 입장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또한, 동 위원회는 99년 2월의 ITA-II협상 재개이외에도 동 위원회 의장 직무 대리인 사보리오 소토(Ronald Saborio Soto) 대사가 제안한 99년도 작업 계획에 합의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동 위원회는 비관세조치가 정보기술제품의 자유로운 교역을 저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특히 기준분야의 구조적인 작업을 강조함
- 둘째, 정보기술제품을 분류함에 있어서의 이견조율과 반도체 제조 및 검사장비, 인쇄배선회로기판/프린트기판(printed circuit board/printed wiring board) 제조장비에 관한 既작업들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것임을 표명함

2. WCO 통일원산지

1995년 7월부터 WCO(세계관세기구) 및 WTO에서 통일원산지 규정을 제정하여 WTO 원산지규정 협정 Annex III에 부속키 위하여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기본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 국가내에서 완전히 생산되는 경우는 당해국가에 원산지를 부

여하고 2개국 이상이 연관되는 경우는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데 합의 하였다.

협상의 핵심사항은 실질적 변형에 대한 정의 여부인데 기본적으로 실질적 변형은 세번변경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부가가치 기준과 공정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은 작업개시 3년이 되는 시점인 98. 7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어 왔으나 모든 물품에 대한 품목별 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방대한 작업량, 기술적 성격, 각국 견해 대립 등으로 시한내 종료되지 못해 99년 11월까지 작업시한을 연장하였다.

* 쟁점사항 <표 5>

3년여의 작업기간중 우리 정부는 품목별 아국제안서 및 우리입장에 대한 기술적 근거(technical file) 작성 제출하였으며 99년 11월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금년에는 WTO에서의 작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로 우리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3. 투자이슈

기업활동의 세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로 고려되는 해외투자과 관련하여 OECD가 95년부터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협상을 주도하였으며, 다자간투자협정의 주요 내용은 ①각국의 투자제도를 자유화하고 ②투자자와 투자를 보호하며, ③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분쟁해결과정을 마련한다는 세 부분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추가적 의무사항으로 핵심인력(투자관련 임원, 관리자, 전문가) 이동의 자유화, 민영화 시 외국인투자자 참여보장, 외국인투자자 대한 이행의무(수출이행, 국산부품사용, 국내 재화 및 용역사용, 국제수지 균형) 부과금지, 독점기업의 외국인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한 차별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혜국대우, 내국민 대우 그리고 투명성의 세가지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의 대국가 분쟁해결

을 포함하여 분쟁해결을 강화함으로써 이 협정의 강제성을 높였다.

투자관련 다자간논의구조의 필요성은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현존 교역체제의 보완을 위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FDI 유입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수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대체로 외국인투자자는 인센티브 및 역인센티브에 대해 국내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반응하며 국내투자자에게 있어 매력적이지 못한 국가들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내투자자를 위한 제도적 환경의 질은 투자의 요구수준 달성 및 구조확립을 위한 개도국의 노력에 있어서 핵심 항목이다.

일부 국가에서 외국인투자 정책은 투자유치국의 산업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경쟁정책의 대신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FDI 규제와 다른 정책간의 연계는 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한 접근과정의 일환으로 제도적 구축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다.

4. 전자상거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의 이용확대로 새로운 형태의 거래형태인 전자상거래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 세계 전체의 인터넷 거래는 1996년의 5억달러 수준에서 2000년에는 66억 달러(최대 6,0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

(표 5)

구 분	논의(쟁점)사항	각국의견 또는 합의사항
통일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	통일원산지규정과 다른 WTO협정과의 관계	· 우회덤핑 등의 판정시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한국, EC등) · 일률적 적용에 대해 재검토(미국)
품목분류(HS)	통일원산지규정의 토대가 되는 HS Version	현행 HS 사용 (HS개정시 통일원산지규정 개정)
대체가능물품 (Fungible goods)	곡물등 상업적으로 대체가능한 물품은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 결정	· 찬성(미국, 캐나다등) · 반대(혼합물에 관한 규정 적용; 한국, 홍콩, 뉴질랜드 등)
세트물품(Sets)	다수국산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의 원산지 결정	세트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 최고가 물품생산국에 의하여 원산지 결정(세트화 공정은 불인정)
중립요소 (Neutral elements)	연료, 에너지, 기계설비등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는 요소는 원산지결정시 무시하도록 하는 규정 도입 여부	· 찬성(미국, EC) · 반대(홍콩, 뉴질랜드 등)

- 으로 예측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1996년의 14억원 수준에서 2000년에는 614억원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인터넷 상의 사이버마켓(Cyber Market)은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극복하고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마케팅을 현실화하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음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국제기구 및 주요국들은 전자상거래의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적인 틀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열중하고 있으며 OECD, WTO, APEC, UNCITRAL 등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WTO에서는 98. 5 제21차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한 무관세선언이 채택되었고 동년 9월에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차원의 작업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향후 WTO 산하기구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98. 10월에는 OECD 오타와 전자상거래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조세, 소비자보호, 사생활보호 및 인증과 관련, 정부, 민간, 관련국제기구가 협력키로 합의하였으며 우리 정부에서는 상기 국제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98.9월 관계부처, 민간전문

가 등이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협상대책반'을 발족하였다.

양자적 차원에서는 '98. 11 한미간 전자상거래 및 Y2K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채널을 구축해 놓았다.

5. 무역과 환경

최근 지구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일반대중의 환경인식수준이 고조됨에 따라 환경규제의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특히 국제환경협약과 개별국의 환경관련 조치가 상당한 무역효과를 수반하게 되고 심지어는 직접적인 무역규제의 형태마저 눈에 띄게 되어 자유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GATT/WTO체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이에 WTO, OECD 등을 위시한 각종 국제기구들은 무역·환경의 연계문제에 대해 이슈별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OECD 무역·환경 전문가 위원회는 1998년 12월 23일 종합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비록 각 협약마다 다양한 목적달성을 위해 적용된 무역제재들의 내용은 달랐으나 그 정책적 접근방법에는 유사성이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는 쿼타 등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무역을 통제해온 대표적 사례이며, 바젤협약의 경우도 비협약국에 대한 유해폐기물 수출금지등을 통해 무역제한을 점차적으로 강화해 왔다.

무역제재조치의 적용에 있어서 불법거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통제를 통한 효과적 이행 및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무역제재만으로는 무역흐름을 완전하게 막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으며, 또한 무역제재는 회원국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동 협약들을 준수할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있을 때에만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다자환경협약상 무역조치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향후 WTO, UNEP 및 다자환경협약 사무국들이 대화채널을 형성,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6. 뇌물방지규범

OECD, WTO 및 IBRD 등 여러 다자간 채널을 통해 국제상거래에 있어 뇌물방지를 위한 규범화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중 OECD 및 WTO 차원에서 논의 및 결과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997년 5월 OECD 개정권고에 따라 지난 7월 개시된 협약 교섭에서는 3차에 걸친 실무회의를 거쳐 최종 협약안을 지난 11월 타결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의 형사처벌을 위한 협약」에 관한 서명을 97년 12월 17일에 하였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방지를 위한협약”(Convention on Combat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제15조에 따라 동 협약 비준서를 99. 1. 4(월) OECD 사무국에 기탁하였으며, 이로써 동 협약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99. 2. 15(월) 발효하게 되었다.

*** 협약의 주요 내용**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의 형사처벌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국내법상 범죄로 규정되도록 함(제1조)
- 법인의 책임 :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와 관련하여 법인의 책임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2조)
- 뇌물 및 뇌물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몰수 : 뇌물뿐 아니라 뇌물제공으로 발생한 수익도 몰수토록 함(제3조)
- 사범공조 및 범죄인인도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

위의 수사 기소 등을 위하여 계약당사국간 상호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범공조를 제공하며,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를 범죄인도조약상 인도대상 범죄로 함(제9조 및 제10조)

“OECD 뇌물방지협약”의 발효에 따라 향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제공행 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제경쟁조건의 왜곡이 시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일부 개도국시장에서 단기적인 부담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제고시킴으로써 투자의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7.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자유화의 진전과 경쟁의 광역화로 무역정책은 경쟁정책과 피할 수 없는 연관성을 갖게 됨에 따라 경쟁정책이 통상이슈의 하나로 부각되고 국제간에 정책적인 조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관세 및 비관세 등 국경장벽은 크게 완화되었으나, 국경내에서 기업의 거래관행에 의한 반경쟁적인 요소가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최근 경쟁법의 국제적 수렴

(convergence), 양자간 협정, 다자간·복수국가간 협정 등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OECD와 WTO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경쟁라운드가 빠른 시일 내에 전개될 전망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WTO 무역-경쟁정책작업반은 98년 11월 19일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1998년말까지 WTO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최종보고서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동 작업반 활동기간의 연장을 위한 노력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작업반 활동의 연장을 권고하기로 하였던 동 작업반의 최종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무역구제법(trade remedy laws)의 논의 여부에 관한 각국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정지된 상태이다.

WTO는 금년말까지 완료(completion)하기로 하였던 무역-투자작업반(Working Group on Trade and Investment)의 활동도 연장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양 작업반의 활동은 6개월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WTO의 차기협상라운드 준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 99년 여름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호에 계속)